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(www.emsip.go.kr)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무선국 개설신고서

(「전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4일
신고인	법인명		법인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-) (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)		
시험 전파	발사기간			
	발사내용(주파수, 전파형식, 출력)			

「전파법」 제19조의2제1항제3호, 제22조의2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전파관리소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전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1부 2. 「전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무선국 신고증명서	→	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: 전파관리소		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